

채용업무시행세칙 별표 2 피해자 구제 기준

구 분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채용시 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서류 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필기 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최종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